

서울특별시 성북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성 북 구
(지역경제과)

서울특별시 성북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592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 : 2026년 04월
제출자 : 성북구청장

1. 제안이유

상위법인 「동물보호법」 및 「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」의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조문을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 및 용어 정비(안 제3조, 제5조, 제7조)
- 나. 서울시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 및 용어 정비(안 제8조, 안 제11조, 제12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동물보호법」, 「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」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협의사항 : 해당사항 없음
- 라. 기 타

1) 입법예고 : 2026. 2. 26. ~ 2026. 3. 18 (20일간)

2) 입법예고 방법 :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

- 예고결과 : 의견 없음

3) 신·구조문 대비표 : 별첨

4) 비용추계 등 자료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5) 인권/부패/성별/아동 영향평가 결과

- 인권영향평가 : 원안동의
-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
- 성별영향평가 : 개선사항 없음
- 아동영향평가 : 대상 아님

서울특별시 성북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성북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제5조”를 “제6조”로 한다.

제5조제2항 중 “한다) 또는 등록인식표”를 “한다)”로, “동물보호관리시스템”을 “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(이하 “동물정보시스템”이라 한다)”으로 한다.

제7조 중 “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(www.animal.go.kr)”을 “동물정보시스템”으로 한다.

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② 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할 때에는 동물보호 수준 등을 평가하여 지정하여야 하며, 평가에는 영 제6조에 따른 민간단체 추천인사 및 명예동물보호관이 참여하여야 한다.

제11조제3항 중 “입양하게 하는”을 “분양을 하는”으로, “입양하게 하며”를 “분양하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입양하게 하는”을 “분양하는”으로, “입양하게 하여야”를 “분양하여야”로 한다.

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입양을 하는”을 “분양하는”으로 한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조한 동물을 동물보호센터에 보호조치하여야 한다. 다만, 영 제6조에 따른 단체가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에서 보호조치를 하게 할 수 있으며, 소유권이 구로 귀속된 동물을 법 제45조에 따라 처리하고자 할 경우 보호조치 중인 단체에 우선적으로 분양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구청장의 책무) ① (생략)</p> <p>② 구청장은 「동물보호법 시행령」(이하 “<u>영</u>”이라 한다) <u>제5조</u>에 따른 민간단체에 동물보호운동이나 그 밖에 이와 관련된 활동을 권장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</p> <p>③ (생략)</p>	<p>제3조(구청장의 책무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<u>제6조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5조(등록대상동물의 등록) ① (생략)</p> <p>② 등록대행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에게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(이하 “<u>무선식별장치</u>”라 한다) 또는 등록인식표를 장착 후 <u>동물보호관리시스템</u>에 기록하여야 하며, 등록대상동물이 등록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</p> <p>③·④ (생략)</p>	<p>제5조(등록대상동물의 등록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</p> <p>----- <u>한다</u>-----</p> <p>----- <u>법 제95조제2항</u>-----</p> <p><u>에 따른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(이하 “<u>동물정보시스템</u>”이라 한다)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③·④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7조(보호동물의 공고 등) 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유기동물을 구조하여 보호조치 한 때에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쉽</p>	<p>제7조(보호동물의 공고 등)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

게 볼 수 있는 장소 또는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(www.animal.go.kr)에 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공고문을 작성하여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.

제8조(동물보호센터의 설치·지정 등) ① (생략)

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을 수 있는 동물보호센터는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이나 단체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동물병원
2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·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
3. 축산 또는 수의학 관련 학교 등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
4. 영 제6조에 따른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

③ ~ ⑤ (생략)

제11조(동물의 반환 등) ①·② (생략)

③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공고가 시작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유기동물의 소유자 또

----- 동물정보시스템-----

제8조(동물보호센터의 설치·지정 등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할 때에는 동물보호수준 등을 평가하여 지정하여야 하며, 평가에는 영 제6조에 따른 민간단체 추천인사 및 명예 동물보호관이 참여하여야 한다

③ ~ ⑤ (현행과 같음)

제11조(동물의 반환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는 관리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동물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을 법 제45조 또는 제46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며, 기증 또는 입양하게 하는 경우 중성화수술에 동의하는 자에게 우선으로 입양하게 하며, 중성화수술 등을 권고할 수 있다.

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등록 대상동물인 유기동물을 기증하거나 입양하게 하는 경우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록을 하여 기증하거나 입양하게 하여야 한다.

제12조(피학대동물 보호 및 관리)

① (생략)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조한 동물을 동물보호센터에 보호 조치를 하되, 영 제6조에 따른 단체가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에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, 소유권이 구로 귀속된 동물을 법 제45조에 따라 처리하고자 할 경우 보호조치 중인 단체에 우선적으로 입양하

----- 분양을 하는 -----

----- 분양하며 -----

-----.

④ -----

----- 분양하는 -----

----- 분양하여야 -----
-----.

제12조(피학대동물 보호 및 관리)

① (현행과 같음)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조한 동물을 동물보호센터에 보호 조치하여야 한다. 다만, 영 제6조에 따른 단체가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에서 보호조치를 하게 할 수 있으며, 소유권이 구로 귀속된 동물을 법 제45조에 따라 처리하고자 할 경우 보호조치 중인 단체에

계 할 수 있다.

③ 법 제43조에 따라 소유권이
구로 귀속된 경우 해당 동물을
법 제45조 또는 제46조에 따라
처리할 수 있으며, 기증 또는 입
양을 하는 경우 제11조제3항을
준용한다.

우선적으로 분양할 수 있다.

③ -----

----- 분
양하는 -----
-----.

서울특별시 성북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해당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1조제2항
 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,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
 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-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수정하는 것으로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우며,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,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

4. 작성자

안정생활국 지역경제과장 최종삼